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56
------------	-------

발의연월일 : 2017. 12. 27.
발 의 자 : 김상희 · 기동민 · 김민기
김정우 · 정춘숙 · 권미혁
윤관석 · 윤소하 · 송옥주
위성곤 · 전혜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어 2017년 8월부터 시행되었고,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 또는 임종기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환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예정에 있는데, 제도 정착 이전에 이러한 벌칙 부과의 가능성은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의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절차 완화,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자에 대한 처벌 유예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의료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 나.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 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제10조제1항·2항).
- 다.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임종 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만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 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문서 또는 기록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

록 함(안 제2조제8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8조제1항).

마. 관리기관, 등록기관, 의료기관,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연명의료의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시행을 1년 유예함(안 부칙 제1조 단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착용의”를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말기환자등의”를 “말기환자등 또는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로,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말기환자등에게”를 “말기환자등 또는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말기환자등은”을 “말기환자등 또는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작성연월일

제16조 중 “기록”을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3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기록”을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록”을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이용동의서”를 “이용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사소견서”를 “의사소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은”을 “등록기관, 의료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는”으로, “결정”을 “결정 및 호스피스”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 한다.

법률 제14013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39조제1호·제2호”를 “제39조제2호”로,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39조제1호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013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u>착용의</u>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 ----- ----- ----- <u>착용 및 그 밖에</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 -----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연명의료계획서”란 <u>말기환자등의</u>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u>문서</u> 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8. ----- <u>말기환자등 또는 수개월 이내에</u> <u>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u> ----- ----- ----- <u>문서(전자</u> <u>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10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	제10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

<p>록 등) ① 담당의사는 <u>말기환자등에게</u>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록 등) ① -----<u>말기환자등 또는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게-----</u> ----- -----.</p>
<p>② <u>말기환자등은</u>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u>말기환자등 또는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u> ----- ----- ----- ----- -----.</p>
<p>③ ~ ⑦ (생 략)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 향서의 작성·등록 등) ① · ② (생 략)</p>	<p>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 향서의 작성·등록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사전연명의료의 향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 3. <u>작성일시 및 보관방법</u> 4. (생 략)</p> <p>④ ~ ⑨ (생 략)</p>	<p>1. · 2. (현행과 같음) <u>3. 작성연월일</u> 4. (현행과 같음)</p> <p>④ ~ ⑨ (현행과 같음)</p>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제3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
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

